

자금 및 예산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

2020.11

감사실

감사전략부

1. 목적 및 의의

- 자금 및 예산 운영·관리 업무의 타당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 예산낭비 및 방만경영 요소 점검을 통한 예방관리체계 강화
- 자금·예산 운용 감사의 최초 시행을 통한 감사 사각지대 제거
- 재무·경영 개선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로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

2. 범위 및 대상

- 감사 범위 : 자금 조달·운용 분야 및 예산 편성·집행 분야 전반
 - 대상 기간: 2017.1.1. ~ 2019.12.31. (3개년)
 - 대상 부서: 본사 전 처·실 및 전 사업소
 - 자금조달·운용 및 예산편성·조정: 본사 예산자금부
 - 예산의 조정·집행·사후관리 등: 전 부서
-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선, 메신저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감사 실시

3. 기간 및 인원

- 감사 기간: 2020.8.31(월) ~ 9.4(금), 총 5일간
- 감사반 구성: 총 4명

한국서부발전(주) 상임감사위원회

통 보

제 목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부 서 ○○처 ●●부, ◎◎발전본부 ○○○○처 ◇◇◇◇부,
◎◎발전본부 ◆◆◆◆◆◆처 □□□□부
구 분 소송관리
내 용

1. 업무 개요

소송 주관부서는 소송발생의 주된 원인행위를 관장하는 본사 또는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 중 우리회사의 승소로 확정된 사건이나 상대방의 취하로 종결된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에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소송 비용 확정 금액을 소송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규정 및 판단기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르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소 취하의 경우 소를 취하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확정액은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우리회사 「총무규정」 제29조에는 소송 종결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판결원리금 지급·입금, 소송비용회수, 구상권 행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및 구상청구소송에 대하여는 송무부서장에게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후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여 종결된 소송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회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6건의 소송 건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표 1] 소송비용 확정 결정 미신청 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사건명	소송 가액	주관부서	판결 결과	소송종결일자	소송비용 (추정액)
1	손해배상(기)	252,790	○○처 ●●부	전부 승소	2017.9.7.	7,327
2	낙찰자 지위 확인	50,000	○○처 ●●부	소 취하	2018.11.16.	4,400
3	어업보상금	1,180,349	◎◎발전본부 ◎◎◎◎처 ◇◇◇◇부	일부 승소	2016.9.21.	13,201
4	어업보상금	1,017,279	◎◎발전본부 ◎◎◎◎처 ◇◇◇◇부	전부 승소	2017.6.13.	12,386
5	맨손어업보상금	265,611	◎◎발전본부 ◎◎◎◎처 ◇◇◇◇부	전부 승소	2019.4.25.	7,456
6	손해배상(기)	300,000	◎◎발전본부 ◆◆◆◆◆처 □□□□부	소 취하	2018.6.15.	7,800

※ 자료 : 법무정보통합관리시스템 추출자료 재구성

관계부서 의견 및 검토 결과

○○처 ●●부, ●●발전본부 ○○○○처 ◇◇◇◇부와 ◆◆◆◆◆◆처 □□□□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소송비용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 ●●발전본부장은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6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서부발전(주) 상임감사위원회

시 정 · 개 선 요 구

제 목	산업재산권 기술료 징구 부적정
소 관 부 서	■■■■■■■■실 △△△△△△부
조 치 부 서	■■■■■■■■실 △△△△△△부
구 분	산업재산권관리
내 용	

1. 업무 개요

우리 회사는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협력업체와 함께 발전설비의 정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발선정품 지정, 실증시험 지원, 해외판로 지원, 다자간(협업) 성과공유과제 수행 및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공문을 통해 연 1회 통합 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규정 및 판단기준

「연구개발 업무기준」 7.4.6.6(기술료 징수)에 따르면 우리 회사와 협력업체 간 개발선정품 지정 후 기술사용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협력업체로부터 경상기술료¹⁾ 또는 정액기술료²⁾ 징수가 가능하고 상호간 체결하는 성과공유계약서에는 성과공유 효율, 납부방법을 포함하는 신의성실 의무이행의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기술료의 징수를 담당하는 △△△△△△부가 연 1회 실시하는 징수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계약체결 정보를 수집하여 협력업체가 작성·제출한 매출액을 검증해야 함

1) 경상기술료 징수 효율: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2.5%, 중견기업 2.5%, 대기업 4%

2) 정액기술료 징수 효율: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지원금의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

이 타당하고, 누락 또는 축소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는 등 우리 회사의 권리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도 누락이나 축소 없이 사실과 신의³⁾를 기반으로 성실히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징수한 성과공유금액을 분석한 결과 [표 2]와 같이 우리 회사는 성과공유를 통해 협력업체의 매출이 48,559,373,941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기술료 등 성과공유금액은 480,055,226원이 창출되어 협력기업 경영(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단체 나눔, R&D사업 활성화에 사용되는 등 경영 선순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

[표 2] 최근 3년간 분야별 매출액 및 성과공유금액 현황

[단위: 원, VAT제외]

분야	연도	기술료 비율(최소~최대)	총 매출액(성과)	총 성과공유금액
기술이전	2017	매출액의 0.139~7%	13,324,584,272	127,445,204
	2018	매출액의 0.05664~7%	8,521,632,033	94,567,247
	2019	매출액의 0.05664~2.4%	13,131,995,592	105,009,202
개발선정품	2017	매출액의 1%	739,716,120	7,397,161
	2018	매출액의 1%	2,519,205,152	25,192,051
	2019	매출액의 0.46~2.5%	4,416,943,323	34,375,730
민관공동투자R&D	2018	매출액의 1.25%	665,404,000	8,317,550
	2019	매출액의 1.25%	3,120,000,000	39,000,000
성과공유과제	2017	매출액(국내, 해외)의 1.25%, 2.5%	672,566,955	14,480,510
	2018	매출액(국내, 해외)의 1.25%, 2.5%	759,917,827	14,760,784
	2019	매출액(국내, 해외)의 1.25%, 2.5%	687,408,667	9,509,787
합계	-	-	48,559,373,941	480,055,226

※ 자료 :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3개년 동안 성과공유를 통하여 업체가 신고한 매출액, 전력그룹사가 공동 운영하는 전자입찰플랫폼인 한전SRM에 등록된 계약체결 정보 및 우리 회사의

3) 연구개발 업무기준(2019.10.14.) 제23조(신의성실) 협약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RP시스템의 지급 정보를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 (주)▲▲▲▲▲4)가 제출한 매출정보는 실제 매출액과 차이를 보이는 것을 [표 3]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 3] (주)▲▲▲▲▲ 3년간 기술료 징수액 대비 추정 기술료 비교

(단위: 원, VAT제외)

업체명	비율	연도	이전 업체 제출		한전SRM 및 서부ERP 추출		기술료 차액
			매출액	기술료 징수액	추정 매출액	추정 기술료	
▲▲▲▲▲	매출액 0.5% (발전5사 공동)	2018	366,000,000	1,830,000	1,371,000,000	6,855,000	5,025,000
		2019	1,466,290,000	7,331,450	1,767,290,000	8,836,450	1,505,000
합계			-				6,530,000

※ 자료 : 추출 정보 재구성(2017년은 2018년과 통합 징수하였음)

또한, ▲▲▲▲▲부에서는 기술료 징수를 위하여 협력업체에 공문으로 연 1회 매출 세부실적을 제출 요청하고 매출실적서를 제출한 협력업체에 한하여 성과공유금액 납부 요청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세부실적이 아닌 총액기준으로 매출 실적서를 제출하고 있어 향후 업무 추진 시에는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재요청을 시행하고 최종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검증하는 등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협력업체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하여 우리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 또는 공동개발의 결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6,530,000 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및 검토 결과

▲▲▲▲▲부는 성과공유제는 동반성장을 위하여 우리 회사가 협력업체에 기술을 제공하고 수익이 창출되는 모범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매출실적을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4) 개발선행품으로 성과공유제 참여중인 기관

제시하면서 향후 절차를 보완하여 우리 회사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실장은 기술료를 일부 누락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경상기술료 6,530,000원을 추정하시고(시정),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기술료 징수 및 검증 절차를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개선)

한국서부발전(주) 상임감사위원회

통 보

제 목 회사채 인수기관 선정 업무 처리 미흡
소 관 부 서 ▽▽처 ▼▼▼▼부
조 치 부 서 ▽▽처 ▼▼▼▼부
구 분 자금 관리
내 용

1. 업무 개요

▽▽처 ▼▼▼▼부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금의 조달방법 및 시기를 결정하고, 자금을 차입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등 자금조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 조달자금의 차환 및 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7년 원화회사채 1조 2천억 원, 2018년 원화회사채 6천억 원 및 외화회사채 3억 US달러, 2019년 외화회사채 2억 스위스 프랑 및 3억 US달러를 각각 발행하였다.

2. 관계법령·규정 및 판단기준

「단기자금운용기준」 제6조에 따르면 부족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금융비용, 자금의 안정성, 조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유리한 자금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는 우리 회사의 민평금리⁵⁾에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를 가산하여 공모사채의 발행이자율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는 금융기관이 제시한 인수금액 및 가산금리를 반영한 예상발

5) 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등 민간 신용평가 4개사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평균값으로, 30년 물의 경우 우리 회사에 대한 민평금리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전력의 만기 30년 회사채 수익률을 준용함.

행금액 및 예상발행금리를 기준으로 만기별 예상 금융비용을 산출하고, 예상 금융비용이 높은 인수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자금의 안정성 및 조달의 용이성 등 금융비용 외의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수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 동안의 공모사채 인수 금융기관 선정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는 인수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예상 금융비용 산출·비교 내역 등 인수 금융기관 선정 근거를 관련 문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표 4]와 같이 제42회 회사채 발행 시 3년 만기 회사채(☆☆☆☆ 제안, 인수금액 500억 원, 가산금리 0.02%) 대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0년 만기 회사채(★★★★★★ 등 5개 증권사 제안, 인수금액 600억 원, 가산금리 0.05~0.06%) 발행 결정한 데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4] 제42회 회사채 발행 관련 금융기관 제안 및 선정 내역

(단위: 억원)

구분	3년 만기			20년 만기		
	제안금액	가산금리	선정금액	제안금액	가산금리	선정금액
★★★★★★	500	+0.01%	500	200	+0.06%	200
◁◁◁◁	-	-	-	100	+0.05%	100
◀◀◀◀◀◀◀	-	-	-	100	+0.06%	100
▷▷▷▷	-	-	-	100	+0.06%	100
▶▶▶▶▶▶	200	+0.19%	-	100	+0.06%	100
♠♠♠♠♠♠	-	-	-	100	+0.09%	-
☆☆☆☆	500	+0.02%	-	-	-	-
♣♣♣♣♣♣	-	-	-	100	+0.15%	-
♡♡♡♡	200	+0.23%	-	-	-	-
합 계	1,400	-	500	800	-	600

※ 자료: 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부서 의견 및 검토 결과

▽▽처 ▼▼▼▼부는 상기 내용에 이의가 없으며, 공모사채 인수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금융비용, 자금의 안정성, 조달의 용이성 등의 선정 근거를 관련 문서에 기재하도록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은 공모회사채 발행 시 만기별 예상 금융비용을 산출하고, 예상 금융비용이 높은 인수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자금의 안정성 및 조달의 용이성 등 금융비용 외의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수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서부발전(주) 상임감사위원회

현 지 조 치

제 목 불용처리한 업무용차량 기납부 자동차 보험료 미환급
소 관 부 서 ♥♥처 ❁❁부, ❁❁발전본부 ❁❁부
구 분 총무관리
내 용

♥♥처 ❁❁부는 차량 및 장비관리 총괄부서로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정수 관리, 자동차 보험 일괄 가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각 사업소 ❁❁부는 사업소 업무용 차량의 운용 및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처 ❁❁부에서 일괄하여 계약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 중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계약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기납부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 받아야 한다.

그런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불용 처리한 4대의 업무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 처리 여부를 점검한 결과 [표 5]와 같이 2대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5] 불용처리한 업무용차량 기납부 자동차 보험료 미환급 내역

연번	관리부서	차량종류	차량번호	불용판정일	기납부 보험료(원)	미환급 보험료(원)
1	♥♥처	그랜저2.7	■ ■ ■ ■ ■ ■ ■ ■	2019.9.2.	322,680	289,650
2	❁❁발전본부	모닝SLX	● ● ● ● ● ● ● ●	2018.10.5.	290,310	155,450

관계부서 의견 및 검토 결과

♥♥처 ㉸㉸부와 ㊸㊸발전본부 ㉸㉸부는 불용처리 업무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 업무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업무이다 보니 처리가 미숙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미환급 차량보험료를 즉시 환수 조치하겠다고 하였다.

조치할 사항

♥♥처장, ㊸㊸발전본부장은 불용처리한 업무용차량에 대한 기납부 자동차 보험료 289,650 원과 155,450 원을 각각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